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5일 엄재창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와 잘못된 문장 성분 재배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 정리 등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 강화(안 제4조, 제5조의2, 제5조의3)
  - 심의회 위원을 9명으로 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위촉, 위촉직 위원의 임기(2년)와 연임(한 차례만 가능), 청렴서약서 제출 및 수당과 여비 지급 (안 제4조)
  -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가능(안 제5조의2)
  - 위원의 위촉 해제에 가능한 사항 명확화(안 제5조의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4호)
  -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12조)
  - 회계연도 시작일 50일 전 의회에 제출
-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갱신 시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 갱신의 타당성, 관리위탁 수행실적, 관리능력 등 평가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정립(안 제27조)
-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기준 변경(안 제34조)
  - 대부료·사용료가 전년도의 100분 5 이상 증가 시 증가한 부분 감액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안 문장 정비(안 제1조~제67조)
  -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 등으로의 정비

####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및 2015년 8월 17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와 잘못된 문장 성분 재배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 정리 등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심의회 위원을 9명으로 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2년)와 연임(한 차례만 가능), 청렴서약서 제출 및 수당과 여비 지급(안 제4조),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가능(안 제5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에 가능한 사항 명확화(안 제5조의3) 등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5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일 50일 전으로 명확화하고(안 제12조),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갱신 시 갱신의 타당성, 관리위탁 수행실적,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안 제23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정립하고(안 제27조),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안 제34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안 문장을 정비(안 제1조~제67조)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붙임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